

심사보고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

의안 번호	326
----------	-----

2023. 11. 30.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11. 30.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3. 11.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2.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4년도 예산 편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공유재산 교환 : 우리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서로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필지들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점유관계를 해소하고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사능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 진관생활체육시설이 3기 신도시에 수용됨에 따라 대체 체육시설 조성이 필요한 실정으로, 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사능리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함.

· 공유재산 교환----- 재산관리과

· 사능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체육과

나. 주요내용

(1) 공유재산 교환(남양주시-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기도 교육감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인 화도읍 송라 초등학교 부지를 경기도 교육감에 처분하는 한편, 우리시가 점유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감 부지 18필지를 취득하는 상호 점유토지 교환
- 사업내용 : 점유토지 교환

구분	관련 학교명	점유면적 (㎡)	공시지가 (천원)	가감정액 (천원)	비고
남양주시 소유 점유 토지	남양주송라초 1필지	2,921.5	1,123,024	5,200,270	처분 재산
경기도교육감 소유 점유 토지	금교초 외 9개교 18필지	6,496.3	2,808,658	4,040,638	취득 재산

- 향후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후 등가 산정된 필지 교환 및 등기를 거치게 되며, 교환차액(예상액 12억원)은 교육청 예산편성 이후 우리시 수납예정

(2) 사능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가) 사업개요

- 위 치 : 진건읍 사능리 375번지 등 5필지
- 사업규모 : 부지면적 6,899㎡,
(배드민턴장 5면(연면적 882㎡), 풋살장 1면, 주차장 등)
- ※ 배드민턴장 규격 : 13.4×6.1m (여유공간 : 주변 2m), 풋살장 규격 : 35m×25m
- 사업기간 : 2023. 9. ~ 2026. 12.
- 소요예산 : 85억원 ※ 2023년 공시지가 250,110원/㎡

	계(백만원)	부지매입비	공사비	용역비	기타
금액	8,500	5,500	2,500	150	350

- 연도별 예산 집행계획

구 분	연도별 소요액 (단위: 백만원)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8,500	150	5,850	2,500
시 비	8,500	150	5,850	2,500

○ 증별계획(안)

층 별	연 면 적	용 도	비 고
1층	882㎡	배드민턴장(5면)	주차장 등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진원)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4년도 예산 편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1) 공유재산 교환(남양주시-경기도 교육감)

- 먼저, 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해서는, 송라초등학교 내 우리시 소유의 화도읍 마석우리 593번지 1필지를 경기도 교육감에 처분하고, 경기도 교육감이 소유하고 있는 관내 18필지의 토지를 취득하는 사항이며, 추가적으로 토지 교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균 감정가액 약 12억원의 차액을 우리시가 향후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 편성에 따라 수납하게 되는 안건입니다.
- 교환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들은 송라초등학교의 부지 일부와 금교초등학교 외 17필지의 학교용지 및 도로, 하천부지 등으로서 그간 소유자가 달라 상호 무상 점유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토지 교환을 통해 각 자치단체 간 원활한 부지 활용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향후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수납할 교환차액 12억원의 경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제15조)과 우리시의 시행규칙(제15조) 모두 교환차액은 재산 인도 전에 납입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무상 양 기관 간의 토지 교환 시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능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 다음 사능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진관생활체육시설이 3기 신도시에 수용됨에 따라 대체 체육시설 조성이 필요한 실정으로, 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사능리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6,899㎡에 배드민턴장 5면, 풋살장 1면과 주차장 등으로 소요예산은 85억원이며, 세부적으로는 부지매입비 55억원, 공사비 25억원에 용역비 1억5천만원과 기타 부대비용이 드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9월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하여 전체사업비 85억원으로 최종 선정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등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1차 연도에는 설계비를, 2차 연도에 보상비 및 공사비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부지 및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심사 대비 현장 방문 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 사업추진 시에는 효율적인 부지 활용계획을 통해 배드민턴 경기장 면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체육시설 활용도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